

고성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 [변경] 을위한의견제시의견

(의안번호 제836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12. 18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3. 12. 18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3. 12. 24 총무위원회 상정 · 재검토요구

2. 제안이유

- '93.11.25일(경상남도 고시 제392호) 최종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된 후 군민경제의 활성화와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레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욕구가 확대되어 기존 운동장 부지가 협소하여 확장을 통한 각종 체육대회의 유치 및 고성스포츠 위상 정립과 고성관광자원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3. 주요골자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 계획면적 : 244,600㎡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기존면적 : 92,560㎡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증가면적 : 152,040㎡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계획 : 불임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할시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있어, '93.11.25 경상남도고시 제392호로 최종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된후 군민경제의 활성화와 문

화 수준의 향상으로 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 욕구가 확대되어 기존 운동장 부지가 협소하여 체육시설 부지 확장을 통한 전국 규모 체육대회 및 각종 운동 경기를 유치함으로써 고성스포츠의 위상을 정립하고 고성관광지원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입안 내용을 보면 고성읍 기월리 소재 도시계획시설(운동장)로 기 결정되어 있는 92,560㎡(자연녹지지역)를 고성읍 기월리, 교사리 일원 244,600㎡(농업진흥지역등 농지일부 및 임야포함)로 확장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명칭을 운동장→체육시설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과 전국 규모 대회 등의 유치 가능한 제2종 공인경기장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발 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 고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축구장, 족구장, 조깅코스 개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씨름장 등),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등) 및 문화생활 영위를 위한 도시공간시설(공원, 광장, 산책로 등)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청소년을 위한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함에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공람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으나,
- 장래 도시기능과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의 타당성, 주민의견 청취사항, 편입토지 중 농업진흥지역 등 농지가 일부 포함됨에 따른 관련 실과 및 경상남도 농지전용협의, 농림부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등 절차, 농지전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대한 대책, 향후 예산확보 방안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견제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계획의 시간적 범위에 계획 목표 년도를 2006년으로 잡았는데 2006년까지 완공을 한다는 것인가?
- 답 : 고성도시계획시설 전체 재정비 할수 있는 계획년도가 2006년이 되겠음.

- 문 :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용역과제 지시때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 답 : 고성군 총인구, 계속 증가하는 생활 체육인구 등을 참고해서 장래 계획에 대비, 고성읍 교사리 지역(성진원~교동 소류지), 고성읍 기월리 지역(봉림 소류지) 2가지 안 사전검토 결과와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라 체육시설 부지중 녹지용지는 전체 부지면적의 40%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관련 법령 등을 제시했음.
- 문 : 고성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으로 체육시설 조성시 예상 소요 자원 규모는?
- 답 : 우선 군(문화관광과)에서 당장 추진해야할 성진원과 운동장 사이 지역 토지매입비가 30억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음.
- 문 : 고성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보고서가 있으면 1부를 제출해 주기 바람.
- 답 : 예. 제출하겠음.
- 문 :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절차를 보면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의견 청취를 거쳐 군계획위원회 심의토록 절차가 되어있는데 군민의 대표자 기구인 지방의회 의견은 참고로만 듣고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는 뜻인가?
- 답 :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절차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절차를 도상으로 정리해 놓은 내용으로 주민의견이나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그 의견이 타당할시 군 계획위원회 심의시 반영토록 되어 있음.
- 문 : 고성군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볼 때 고성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에 다른 의견이 없으나, 현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된 것이 전혀 없고, 장래에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투자비용 금액 및 산출근거 제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등을 감안하여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게 접근을 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 답 : 예. 그렇습니다.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3. 12. 24 출석위원 전원 재검토 하도록 요구

덧붙임 : 고성군의회 의견서 1부.

고성군의회의견서

제 목 고성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의 건

○ 본 의견 제시의 건은 1993년 11월 25일 경상남도고시 제392호로 최종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된 이후 군민경제의 활성화와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 욕구가 확대되어 기존 운동장 부지가 협소하여 체육시설 부지 확장을 통한 전국 규모 체육대회 및 각종 운동경기를 유치함으로써 고성 스포츠의 위상을 정립하고, 고성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입안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입안내용은 기 결정되어 있는 체육시설부지 92,560㎡를 244,600㎡로 확장하고 도시계획시설의 명칭을 운동장에서 체육시설로 변경함으로써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과 전국 규모 대회 등의 유치 가능한 제2종 공인경기장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고성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 및 문화생활 영위를 위한 도시공간시설을 설치함에 있음.

고성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입안사항 의견제시의 건을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고성군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고성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에 다른 의견이 없으나, 현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된 것이 전혀없고, 장래에 체육시설 구성에 따른 투자비용금액 및 산출근거 제시 등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게 접근을 해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함.

2003. 12. 24

총무위원회위원장 하 학 열